



제41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추경으로 신설·증액된 사업성과에 대한 성과보고서 작성·제출〉
■ 권명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5708호)

2024. 2.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추경 편성으로 신설·증액된 사업성과에 대한 성과보고서 작성·제출 (안 제34조, 제71조 및 제85조의7)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권명호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3. 12. 1.

다. 회 부 일 : 2023. 12.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 등으로 수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성과보고서 상에는 당초의 예산에 대한 사업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따라 신설되거나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과의 성과내용이 제대로 구분되지 아니하여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따라 신설되거나 예산이 증액된 사업의 성과를 국민들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성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할 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따라 신설되거나 예산이 증액된 사업과 관련되는 성과를 발췌하여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제출토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이에 대한 성과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71조 및 제85조의7).

Ⅲ. 검토의견

1. 추경 편성으로 신설·증액된 사업성과에 대한 성과보고서 작성·제출 (안 제34조, 제71조 및 제85조의7)

현행	개정안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85의7) - 각 중앙관서의 장은 §31①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u>기금관리주체는 §66⑤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u> <후단 신설> <신설> ○ 예산안의 첨부서류 (§34) -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제4호) ○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71) -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제4호)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85의7) - 각 중앙관서의 장은 §31①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u>제출하여야 함.</u> 이 경우 성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u>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신설되거나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과 관련되는 성과를 발체하여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u> (제1항) - <u>기금관리주체는 §66⑤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u> (제2항) ○ 예산안의 첨부서류 (§34) - 제85조의7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제4호) ○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71) - 제85조의7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제4호)

개정안은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신설되거나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과 관련되는 성과를 발체해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 1999년 시범 시행된 이후 2006년 전 부처로 확대되었음. 이후 2009년부터는 성과계획서가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되고 있고 2011년부터는 예산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등이 일치하도록 「국가재정법」이 개정(제8조제9항)되었음.

이후 2021년 12월 「국가재정법」 제85조의2부터 제85조의12까지 ‘성과관리(제4장의2)’라는 새로운 장이 신설¹⁾되면서 성과관리가 강화되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됨.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크게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및 심층평가제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란 각 부처의 임무,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를 중심으로 부처 전체 예산사업의 계획과 성과를 점검하는 것을 의미함²⁾.

상기한 바와 같이 당초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에 규정되어있던 성과관리 내용이 2021년 제85조의2부터 제85조의12까지 구체화되어 신설되었고, 같은 법 제34조(예산안 첨부서류) 제8호,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4호, 「국가회계법」³⁾ 제14

1) 「국가재정법」 제4장의2 성과관리 <신설 2021. 12. 21.>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제85조의3(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5조의5(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추진체계),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제85조의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제85조의8(재정사업 성과평가), 제85조의9(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제85조의11(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제85조의12(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2)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2012. pp. 104-5.

조(결산보고서의 구성) 제4호 및 같은 법 제15조(결산보고서의 작성)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정부의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서 목표한 바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를 계획대비 실적의 형식으로 점검하는 결과보고서를 의미함⁴⁾. 특히 「국가재정법」 제85조의6⁵⁾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

3) 「국가회계법」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결산(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포함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말한다)
3. 재무제표
 - 가. 재정상태표
 - 나. 재정운영표
 -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제15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제14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결산의 내용을 요약하여 예산 및 기금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 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작성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상게서, p. 106.

5)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과지표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회계법」 제15조 제4항에서도 성과보고서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편성된 회계연도에 정부가 제출하는 결산보고서 서류인 중앙관서별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구분되어 표시되지 않고 최종 추경예산을 기준으로만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표시되어 있어 수요자 입장에서 추경사업의 성과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로 인해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추경을 편성하였음에도 당초 본예산 사업 대비 추경에서 신설되거나 증액된 사업의 성과의 내용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아 추경을 통해 달성되는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020년 ~ 2022년 추경 편성 현황]

구분		확정 예산	편성 목적
2020년도	제1회	11.7조원	코로나-19 영향 최소화 및 조기극복
	제2회	12.2조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3회	35.1조원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제4회	7.8조원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 지원
2021년도	제1회	14.9조원	방역상황 장기화 및 고용 약화 지원
	제2회	34.9조원	코로나-19 피해지원, 백신·방역, 고용·민생 등 지원
2022년도	제1회	16.9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방역 지원
	제2회	39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장 및 방역·민생 대책

이에 개정안은 추경의 편성에 따라 신설되거나 예산이 증액된 사업과 관련된 성과를 발췌하여 별도의 성과보고서를 작성·제출토록 규정하여 추경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추경을 통한 사업의 성과를 본예산과 분리하여 별도로 측정하기에는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곤란한 측면이 있음.

추경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성과분석을 할 필요성은 있으나 해당 사

업의 성과를 측정할 때 추경으로 인한 효과만을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추경만의 효과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성과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추경 편성에 따라 신설·증액된 사업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현행 성과보고서 체계 하에서 추경사업현황과 성과목표·성과평가 등을 별도 첨부문서 형식으로 추가한다면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도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는 성과계획서의 경우 현재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추경예산 관련 성과계획 현황’ 자료를 별도 작성하여 성과계획서 별첨자료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성과보고서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개정을 통해 추경예산 관련 별도 자료 작성·제출이 가능하므로⁶⁾ 법률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6) 기획재정부는 향후 성과보고서도 성과계획서와의 일관성 등을 감안, 지침 개정을 통해 ‘추경예산 관련 성과’ 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성과보고서 별첨자료로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 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야 한다.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8. 제85조의7제1항-----
9. ~ 16. (생략)	9. ~ 16. (현행과 같음)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 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 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 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 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4. 제85조의7제2항-----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제85조의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 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 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 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85조의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의 제출) ① ----- ----- -----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보

현행	개정안
<u>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u> <u><신설></u>	<u>고서를 제출할 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따라 신설되거나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과 관련되는 성과를 발췌하여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u> <u>②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u>

문의처

02)6788-5147